



5. 본 사항은 제16차 (76.10.11) 및 제15차 (76.10.9)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심의 의결되었습니다.

가. 종합이로시설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종합이로시설	종로 명동동 2가 4번지 일대	14.114 (4.277평)	
"	강남구 반포동 산 34-1 외 67필지	114.569 (34.718평)	

첨부 1.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일부

2. 관계도면 일부

도시안심사 1976.10.20	제 289호
심사자	김우담
호수	김우담

제 2 안 고 사 안

서울특별시 도시

도시계획시설(종합이로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종합이로시설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~~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12조~~ 행정관청의 위임 및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부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등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10.

서울 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종합이로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종합이로시설	종로 명동동 2가 4의 30 필지	14.114	
"	강남구 반포동 산 34-1 외 67 필지	114.569	

별첨 도면 생략

제 3 안

수신 건설부장관

발신: 시장

제 특 등 건



1. 카운트다운 중립수상등등 2가 수반지출에 의 1개소  
에 대하여 별첨 2서류 사본 및 드면 등서와 같이 도시계획  
시설(중립수상시설) 결정 및 자락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 
등법 제 13조에 의거 표시하였기 **통보**합니다.

첨부. 2서류사본 및 드면 1부.

제 4안

수신. 중립수상장 (카운트다운) **발신: 시장**

1. 카운트다운 중립수상등 2가 수반지출에 (반동동 살 33안)  
에 대하여 별첨 2서류 사본 및 드면 등서와 같이 도시  
계획시설 (중립수상시설) 결정 및 자락승인 하였고 카운  
트다운을 정회하는 등시 기사등에 기사하여 이에  
관제인에게 보이게 하라 결속까지 증명서류 등 제반  
업수처리에 **추진**하기 바랍.

첨부. 2서류 사본 및 드면 1부.

제 5안

수신. **추진**처 한소 **발신: 시장**

1. 카운트다운 **추진**하신 도시계획시설 (중립수상시설)  
결정 5월 1일에 대하여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 별첨 2서류  
사본 및 드면 등서와 같이 2시되었기 **통보**합니다.

첨부. 2서류 사본 및 드면 1부.

제 6안

수신. **추진**처 한소 (사. 문화공보실장) **발신: 시장**

제 특 관(시)보 기재 의뢰  
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기재를 의뢰하오 기재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기재 구분: 2시

나. 관(시)보 기재 건설: 도시계획시설(중립수상  
시설) 결정 및 자락승인

다. 법칙은거: 드사지화법 제12호 및 등법 제

13호

천 부. 2/4분 사분 2부 (1부) 쓴.

65

결재  
1976.10.23